##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의 확정에서 류의할 문제

백 영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사법검찰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17폐지)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은 우리 나라 법의 기본사명이 며 임무로 된다.

우리 나라의 다른 모든 법들과 마찬가지로 민법도 공민의 생명재산을 법적으로 보호 하고있으며 만일 공민의 인신이 침해되여 재산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그에 해 당한 보상책임을 지운다.

인신침해로 인한 재산적손해에는 치료비, 장례비, 수입손실액, 부양료원천의 상실 등이 있으며 이것은 인신침해로 인한 재산적손해의 대표적인 형태들이다. 때문에 치료비, 장례비, 수입손실액, 부양료와 관련한 손해보상액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사건을 정확히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류의하여야 한다.

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우선 인신을 침해당한것으로 하여 피해자가 국가의료기관에서 무상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가해자가 피해자앞에 보상하는 손해보상항목으로서의 치료비에 포함시켜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인신침해로 하여 피해자가 국가의료기관에서 무상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은 가해 자가 피해자앞에 보상하는 손해보상항목으로서의 치료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료기관에서 무상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비용도 지출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피해자가 치료와 관련한 그 어떤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일 가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면 피해자는 그만 큼 리익을 얻게 된다. 치료비는 국가가 지출하였는데 그에 해당한 보상을 피해자가 받게 하는것은 명백히 불공평한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국가의료기관에서 무상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가해자가 피해자앞에 지는 손해보상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의료기관에서 무상치료받은데 대한 비용을 손해보상항목으로서의 치료 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아무려한 손해보상책임도 지우지 않는다는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이 경우에 가해자에게 아무려한 손해보상책임도 지우지 않는 다면 법의 제재적 또는 교양적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신침해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국가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은데 대한 비용은 가해자가 국가에 보상하게 하여야 한다.

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또한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의 건 강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전부를 가해자가 피해자앞에 보상하는 손해보상항목으로서 의 치료비에 포함시켜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건강회복과 회복된 건강상태의 안정한 유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비용을 지출할수 있다. 이러한 비용지출들이 가해자의 인신침해행위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손해보상항목으로서의 치료비에 다 포함시킬수는 없다. 그것은 이러한 비용지출모두가 피해자의 병치료에 꼭 필요한것이라고 볼수 없기때문이다. 만일 피해자측에서 지출한 비용전부를 치료비에 포함시켜 가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면 손해보상제도의 설정목적에 맞지 않게 될뿐만아니라 피해자측이 치료와 무관계한것들까지 구입하고 그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여 부당한 리득을 보는 현상이 초래될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병치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지출에 대해서만 치료비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인것이라고 볼수 있다.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는 다음으로 장례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류의하여야 한다.

장례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우선 장례비와 관련한 손해보상 액을 어떤 기준에서 확정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완전보상시켜주는 손해보상제도의 설정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측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전부를 가해자가 보상하게 하는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여야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현실에서는 재산형편이나 가족 및 친척관계 등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가정도 있을수 있고 적은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가정도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측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보상액을 확정한다면 매 경우마다 가해자가 보상해야 할 액수가 서로다르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법집행에서의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것은 물론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불공평한것으로 될수 있다.

장례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액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균장례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균장례비용에 기초하여 손해보상액을 확정하면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같은 액수로 보상하고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장례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질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장례비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또한 피해자측에서 장례와 관련 한 재산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의 장례를 치르는것으로 하여 피해자측이 일정한 리익(조의금)을 얻게 될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기관이나 단체의 성원들, 그밖의 리해관계인들이 애도의 뜻으로 피해자측에 주는 조의금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등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해자의 불법침해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손해와 함께 리익도 얻는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보상액에서 피 해자가 얻은 리익만큼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얻은 리익을 가해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보상액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의 인신침해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조객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 게 되는 조의금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반드시 얻게 되는 리익인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위문의 뜻으로 조객들이 도덕적으로 증여한것들이다. 이러한 재산상리익은 피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도덕 적의리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마련된것들이다. 때문에 가해자가 물어야 할 장례비에서 이와 같은 재산상리익을 제외시켜야 할 아무러한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서 장례기간 얻은 리익과는 관계없이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전부를 보상하여 야 한다.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는 다음으로 수입손실액과 관련한 손해보상액확 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류의하여야 한다.

수입손실액과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우선 합법적인 수입손실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는것이다.

인신침해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발생한 수입손실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인정될 때에만 수입손실액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려한 법적타당성도 없는 《수입손실》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수 있었다고 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보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수입손실액과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실제적인 수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입손실액과 관련한 보상문제가 제기될수 있는 가 하는것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실제적인 수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입손실액과 관련한 보상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실례로 미성인이 가해자의 인신침해행위로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를 들수 있다.

피해자의 인신이 침해당하여 상해를 입으면 로동능력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할수 있다. 이때 로동능력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그자체가 일종의 손해로서 이것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수입뿐아니라 앞으로 얻을수 있었던 수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피해자의 로동능력을 상실시키거나 감소시키는것과 같은 인신에 대한 침해행위는 비록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수입이 없다 해도 앞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는것으로 되므로 가해자는 응당히 피해자의 로동능력을 상실 혹은 감소시킨데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는 다음으로 부양료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 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류의하여야 한다.

부양료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우선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를 어떻게 리해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에는 피해자가 법적인 부양의무를 지고있던자와 법적인 부양의무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부양하고있던자가 포함될수 있다.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는 피해자가 법적인 부양의무를 지고있던자로 리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법적인 부양의무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부양하고있던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부양의무를 지고있는자가 따로 있게 된다. 법적인 부양의무를 지고있는자가 따로 있는 조건에서 피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양을 받을자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태여 법적인 부양의무를 지고있지 않는 피해자의 실제적인 부양을 받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법적인 부

양의무를 지고있지 않으므로 그의 실제적인 부양을 받는자에게는 법적인 부양청구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제적인 부양관계를 법적인 부양관계처럼 인정하고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것이다.

부양료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또한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의 범위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피해자의 자녀도 포함되는가 하는것이다.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그러므로 공민은 출생한 때부터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부양료청구권을 비롯한 그 어떤 형태의 민사적권리도 지닐수 없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태아의 민사권리능력문제를 이와 같이 처리하는것은 합리적인 해결방도로 될수 없다. 만일 태아에게 부양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의 출생후 성장발육에 지장을 줄수 있게 된다. 실례로 가해자의 불법침해행위로 하여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임신부의 배우자를 사망시킨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 태아에게 부양료청구권이 없는것으로 본다면 가해자는 임신부에게만 부양료를 물어주어야 한다. 만일 자녀가 태여났다면 산모는 한명분의 부양료를 가지고자녀도 같이 부양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배우자의 생존과 태아의 출생후의 성장발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발생한다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태아에게 부양료청구권과 같은 일련의 권리에 대한 민사권리능력을 부여하여 태아를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양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태아를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해자로부터 부양료를 받게 하는 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태아에게 부양료를 받게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의 생존을 위한것인것만큼 만일 태아가 불법침해행위가 있은 후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다면 그의 부양료청구권은 응당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양료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또한 부양료지불기간을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피해자에게 부양료를 지불하는 목적은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부양을 받을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부양료지불기간도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가 독자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갈수 있을 때까지의 범위로 정하는것이 공평하다고 볼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 미성인자녀에게 부양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부양료지불기간을 미성인자녀가 행위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갈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기 즉 미성인자녀가 로동능력을 가질 때까지로 한다. 부양받을자가 미성인인 경우 부양료지불기간을 그가 로동능력을 가질 때까지로 보는것은 그가 그때쯤이면 자기의 로동력으로 능히 자기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게 되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미성인자녀가 로동능력을 가지는 때가 되면 가해자의 부양료지불의무는 소멸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 장애자나 년로자들에게도 부양료를 지불해야 한다. 장애자나 년로자들은 성인이지만 로동능력을 가지지 못하기때문에 그들에게 부양료를 지 불해야 한다. 이와 같은 로동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료지불기간을 그들이 로동능력을 갖추게 되거나 사망할 때까지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가해자가 그들의 부양원천 을 상실시킨것으로 해서 피해자가 지니고있던 부양의무를 그대로 지닌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자나 년로자와 같이 부양을 계속 받아야 할 경우 그들이 로동능력 을 갖추게 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가해자는 부양의무를 계속 지니고 그들에게 부양료를 지불해야 한다.

태아에게 지불되는 부양료는 태아의 출생후부터 그가 로동능력을 가지는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

부양료와 관련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류의할 문제는 또한 부양료의 범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겠는가 하는것이다.

부양료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중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부양료액수가 달리 결정되게 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불법침해손해보상제도의 설정목적에 비추어볼 때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양료의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생전에 자기가 부양의무를 지고있던자들에 대하여 어떤 정도로 부양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양료의 범위를확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가해자의 생활형편이나 보상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것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지나친 보상부담을 지울수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의 생활형편이나 보상능력을기준으로 하여서만 부양료를 확정할수도 없다. 단순하게 가해자의 생활형편이나 보상능력을기준으로 하여서만 부양료를 확정할수도 없다. 단순하게 가해자의 생활형편이나 보상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부양료를 확정한다면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들이 이전의 부양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양료를 받게 될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들에게 있어서는 명백히 손해로 된다.

가해자가 보상하여야 할 부양료의 범위를 피해자를 기준으로 확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련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균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여야 한 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균생활수준에 기초하여 부양료범위를 확정하면 손해보상이 피 해자의 부양을 받던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지나친 보상부담을 지우지 않는것으로 될수 있다. 즉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균생활수준에 기초하여 확정된 부양료는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에게 적합한 액수로 될뿐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무리한 부담을 주 지 않는 액수로서 비교적 공평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는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확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그것을 사법실무실천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공민의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인신침해, 손해보상액